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- 가. 성 명: 서 성 용
- 나. 생년월일: 1981.11.26.
- 다. 소 속: (주)효성감정평가법인

2. 징계내용

- 가. 징계종류: 업무정지 1월
- 나. 효력발생일: 2024.11.19. ~ 2024.12.18.
- 다. 사유: 영업권 가치산정을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4년 10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